행복미소의집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급여비용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 4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750	61,010	56,2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없 음		
	식재료비 (3식)	3,000×3 = 9,000		
	간식비 (1일)	500		
	이/미용료 등	없음		

◇ 세부내역 (월 30일 기준) 1등급 본인부담금 20%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1,972,500	
요양보험 부담비용(급여) (80 %)		1,578,000	1,972,500*80%
개인 부담비용 (비급여)	소 계	680,000	
	요양급여비용 (20 %)	395,000	
	식사재료비/간식비	285,000	간식비 500, 1식 3000
	상급침실 이용료	없음	
	기타	약값 및 기타 서비스 비용 별도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또는 12%**	6% 또는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입소 전 수급자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입소이용신청을 하여 시에서 입소승인의뢰서를 받은 후 입소를 하고 그 이후 시설로 주소 이전을 해야함.

※ 보험료순위 25%이하: 감경률 60% 산정으로 본인부담률 8%,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감경률 40% 산정으로 본인부담률 12%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①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①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퇴소)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면회 및 외출, 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급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

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입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제20조 (서약서)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자가 행복미소의 집 시설에 입주해 생활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1. 입소자는 시설이 운영 중인 다중 생활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준수한다.
2.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소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최소한 보름(15일)전에 시설에 통보하고 퇴소 절차를 밟아 시설이 정한 퇴소 비용을 정산한다.
3. 시설은 입소자의 생활과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하기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입소자의 건강 사정에 따라 귀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 하면 시설은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조치하기로 한다.
5. 보호자의 주소지 이전, 연락처 변경이 발생 되면 즉시 시설에 알리기로 한다.
6. 시설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투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외 항목은 입소자가 추가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지체 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7.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악화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자 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력 병원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 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입소자의 지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및 자연사,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의료시설에서 권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을 경우, 시설 종사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단외출이나 돌출행동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데 입소자는 동의한다.**
9. 입소 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등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는 보호자가 책임지며 입소자에 대한 시설의 정당한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시설은 입소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기록과 생활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입소자의 외출, 외박 등 시설 외 생활은 보호자가 시설장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며 시설장의 허락 없이 진행된 시설 외 생활은 보호자가 책임진다.